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6. 08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감봉(4명), 경고(19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불건전채권 회수 관련 수당 지급 소홀

○ 악성 불건전채권 처리시, 채권추심업체에 회수 관련 수당 지급 및 관련 회계처리를 소홀히 하였음.

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취급 부적정

○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시, 검토 및 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채권관리업무방법」 제1편 제44조(채권매각 및 전문 기관에 회수위임), 제67조의12(채권관리 위원회 역할), 제341조(적용원칙), 제375조(회수포상금 지급), 제375조의3(채권매각 대상기관)
- 「상호금융 회계업무방법」 제1편 제47조(가지급금), 제3편 제5조(수수료비용)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8조(신용·담보조사), 제10조(심사 및 승인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8조(사후관리), 제48-3조(심사대상), 제48-6조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148조(담보의 종류), 제161조(담보취득의 원칙), 제250조(용어의 정리), 제3편 제45조(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)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 “징계양정기준표”